

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

2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(조례 제714호 부칙 제2조 삭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관련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3.05.28자로 개정됨으로 인해,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